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군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 변경(안 제35조제1항제3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제출 대상인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변경함.

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 변경(안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대상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장애가 있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변경함.

다. 「군인연금법」(2015.3.11. 법률 제13214호) 개정에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 (부칙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계산식 중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6.~2022. 6. 16.)

대통령령 제 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퇴역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를 “퇴역유족연금 등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075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와 제2호 중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생 략) 1. ~ 2. (생 략)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 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퇴역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 세 이상으로서 「군인 재해보상 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 ② (생 략)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퇴역 유족연금 등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 실 신고 및 이전) ① (생 략) 1. ~ 2. (생 략) 3. <u>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 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u> 4. 장애가 있던 19세 이상의 자 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가 해 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 ② (생 략)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 실 신고 및 이전) ① (현행과 같 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 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u> 4. -----25세-----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대통령령 제30759호, 2020. 6. 9.)
제3조(복무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1. 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보수월액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13년 7월 1일 전날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생략)

1. 보수월액의 경우: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대통령령 제30759호, 2020. 6. 9.)
제3조(복무기간 등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② (현행과 같음)

1. -----

<u>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 (<u>군인 임용 당시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2. <u>평균보수월액의 경우</u>: (종전 퇴직 당시의 <u>평균보수월액</u>을 <u>군인보수인상률</u>을 반영하여 <u>군인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u>) ×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u>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 (<u>군인 임용 당시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③ ~ ④ (생략)	<u>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u>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2. ----- ----- ----- ----- --<u>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u>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락처	(02) 748 - 6671